

# 안산시 안전관리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22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2. 22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제안이유

- 안전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심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### 가. 위원회 위원의 구성 범위 확대 (안 제 3조 제1항 제 6호)

- 안산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

### 나. 안전관리 소위원회 위원장을 변경(담당국장 → 시장) 조정함(안 제7조 제2항)

-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1조 제 2항에 따라 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

- 안전관리자문단 · 시전재해영향성검토 소위원회위원장은 기존대로 담당국장이 수행

### 다.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 7조의 2)

- 안전관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 등 업무 수행

### 라.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 개정 조례안 : 불임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,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5조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 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 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11. 4. ~ 11. 24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현행 조례
- 수원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

#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6.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제7조제2항 중 “소위원장은” 을 “제1항제1호의 장은 위원장이 겸임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장은” 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실무위원회) ①제7조제1항제1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관·단체별 2명 이하로 한다.
-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

2. 안전 및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 관리

3. 「공연법」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

4.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행사성격, 위험도판단,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요청한 안산시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사항은 시설구조, 전기, 가스, 소방, 안전 분야 등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제1호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2조 본문 중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재난 안전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재난안전과장 이 장 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재난 안전계장 임 병 권
	담당자 성명·전화	임 병 권 (행정 2725)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(생략)            1. ~ 5. (생략)              (신설)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 <u>6.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</u></p>
<p>제7조(소위원회) ② 소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, <u>소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.</u></p>	<p>제7조(소위원회) ② -----  ----- <u>제1항제1호의 장은 위원장이 겸임하고</u>  <u>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장은-----</u></p>
<p>(신설)</p>	<p>제7조의2(실무위원회) ① 제7조제1항제1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관·단체별 2명 이하로 한다.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   1.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    2. 안전 및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의 조정 및 사후 관리    3. 「공연법」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   4.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행사성격, 위험도 판단,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요청한 안산시 주관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사항은 시설구조, 전기, 가스, 소방, 안전 분야 등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제1호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.</p>
<p>제12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2조(수당 등) -----  ----- <u>범위에서-----</u>  -----  -----.</p>